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8 장(정부조달) 또는 제 10 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2. 당사국은 제 21.1 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 1 항다호를 원용할 수 없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0.4 조
협의

1. 어떠한 당사국도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20.2 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의 접수일부터 10 일 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2.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개최되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국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55 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15 일 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접수일부터 25 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 20.7 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 동안에 자국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한쪽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 기관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동안 활용 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 20.5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 20.4 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55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이나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25 일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서의 전달로부터 10 일 내에 회합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 20.6 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절차를 언제든지 개시,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가 양 당사국 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7 조

패널의 설치

1. 사안이 다음 경우 중 어느 경우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제 20.4 조에 규정된 55 일 기간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25 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동안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나.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의 접수 후 20 일 내, 또는 긴급한 경우 10 일 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 20.5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다.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제소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 20.5 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3.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에 설치된다.

제 20.8 조
패널 임명

1. 패널은 3 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제 20.7 조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패널위원의 임명을 통보하고,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후보자를 4 명까지 제안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당사국이 제안한 의장 후보자 명부가 있다면 제안된 의장 후보자 중에서, 또는 그러한 명부가 없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양 당사국은 제 20.7 조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45 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 중에서 의장 역할을 할 패널위원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의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추가 7 일 내에, 양 당사국의 대표 참석 하에, 제안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후 임명된다.

4.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 일 내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15 일 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2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의장으로 제안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5. 패널의 의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30 일 내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15 일 내에 대체자의 임명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3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임명된다.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의 임명이 의장으로 제안된 후보자 명부로부터의 선정을 요구하고, 남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30 일 내에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제안하고, 의장은 추가 7 일 내에 양 당사국의 대표 참석 하에 제안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후 임명된다.

7.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에 정지되고 대체자가 임명되는 날에 재개된다.

제 20.9 조
패널위원의 자격요건

1. 제 20.8 조(패널 임명)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양 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다.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제 20.6 조에 언급된 대체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 부속서 20-가에 규정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2. 패널위원의 해임은 행동 규범(부속서 가)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절차 규칙(부속서 나)의 규칙 제 20 항에 상세히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20.10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규정된 절차 규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 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라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하도록 지정된 정보의 보호

2. 패널 설치의 요청 전달부터 20 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20.11 조제 1 항 및 제 20.11 조제 2 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 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 20.11 조제 1 항 및 제 20.11 조제 4 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3. 보고서의 채택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어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4. 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소는 제소 당사국이 한국인 경우 예루살렘 그리고 제소 당사국이 이스라엘인 경우 서울로 한다.

제 20.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 일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1)문제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2)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또는

3)문제 되는 조치가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권고를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 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 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 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5.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패널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 20.12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 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는 이 장에 따른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절차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상호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패널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4.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 20.13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이행을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행은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와 합치한다.

2.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이행한다.

제 20.14 조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1. 패널이 제 20.13 조제 2 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 접수로부터 30 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 20.13 조제 1 항에 따른 이행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 일 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보상 또는 제 20.13 조제 1 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날 또는 패널이 제 5 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에서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15 일째 되는 날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 20.2 조제 1 항다호상의 혜택을 달리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될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그러한 때까지 한정하여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 일 내에, 원심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 일 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는 120 일 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 5 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5 조
이행 검토

1. 제 20.14 조제 5 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60 일 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 20.14 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 20.16 조
기한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단축, 면제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 20.17 조
경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비용,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인의 보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부속서 20-나(절차 규칙)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부속서 20-가
행동 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2.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사용되는 서식에 기초하게 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3. 일단 임명되면, 패널위원은 제 2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이 패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임명될 자격, 또는 전문가나 보조인이 패널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양 당사국이 박탈할지 여부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양 당사국이 이를 박탈할지는 이 행동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로 인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패널위원의 임무 수행

5. 패널위원은 이 장의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보조인, 직원 및 전문가가 이 부속서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않는다.

10.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달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패널위원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고,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4.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6. 패널위원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9.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공표에 앞서 패널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20.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중개인

21. 이 행동 규범에 기술된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과 조정자에 적용된다.

정의

22.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전문가란 패널이 부속서 20-나의 절차 규칙의 규칙 제 30 항(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보조인을 제외하고 패널 또는 패널위원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의 절차 규칙은 제 20.8 조에 따라 수립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항에 대한 언급은 이 장에 있는 적절한 조항에 대한 언급이다.

절차의 운영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준비를 담당한다.

패널의 구성

4. 패널위원의 임명일은 후보자가 양 당사국에 수락서를 제출한 날짜로 간주된다. 후보자가 선정을 통보 받은 후 2 일 내에 양 당사국에 수락을 알리지 못한 경우, 그러한 후보자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5. 각 당사국은 서면입장의 원본 및 4 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 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전달한다. 패널 절차와 관련된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전달은, 양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팩스 또는 그 밖의 전자 전송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국이 패널 절차와 관련된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실제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적 형태를 동시에 전달한다.

6.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10 일 내에 피소 당사국에 완전한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이어서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 일 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7.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 서면입장 및 패널과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서면입장의 전달일을 정한다.

8. 당사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쪽 당사국이 지정한 법정 공휴일이나 그 당사국의 관공서가 정부의 명령 또는 불가항력으로 폐쇄된 그 밖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 책임

10.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은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국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패널의 운영

12.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절차에 관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패널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그 설치로부터 7 일 내에 행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을 접촉한다.

13.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및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4.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인, 통역사나 번역사, 또는 법정 서기를 고용할 수 있고 그들이 그러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5.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6.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간은 패널 구성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7. 패널은 양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패널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을 수정하고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패널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기간을 수정하고 절차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패널위원의 해임

18.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행동 규범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패널위원 또는 의장을 교체하고 대체자를 선정한다.

19. 양 당사국이 패널위원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사안이 패널 의장에게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의장은 요청으로부터 10 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20. 패널위원이 의장 교체 필요성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10 일 내에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 20.8 조제 2 항에 따라 의장으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나머지 개인 후보자 중 한 명에게 그러한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후보자의 이름은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에 의하여 추첨으로 정한다. 의장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한 이 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심리

21.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최초 심리 일시 및 후속 심리 일시를 정하고, 심리 15 일 전까지 그러한 일시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2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23.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4.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 출석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과 패널에 전달한다.

26.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하여 수행된다.

27.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패널은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8. 패널은 심리 속기록이 있을 경우, 그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본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전문가의 역할

29.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제 31 항 및 제 32 항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 조건에 따라,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0.9 조(패널위원의 자격요건)에 규정된 요건은 적절한 경우 전문가 또는 기관에 적용된다.

30.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한다.

가. 제 30 항에 따라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확인한다. 패널은 양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 30 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31.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제 30 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들이 제출한 의견이나 견해를 또한 고려한다.

서면 질문

32.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패널이 제기한 모든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33. 각 당사국은 패널 질문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전달일부터 5 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일방적 접촉

34.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고 패널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고 한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35.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양 당사국과 패널 절차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정보의 이용 가능성

36.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 심리, 심의 및 최초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입장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을 언제든지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패널 심리에서 제시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은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37.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비용,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인의 보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이 부속서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38. 각 패널위원은 본인과 보조인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언어

39.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영어로 수행된다.

40.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41.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정의

4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자문하거나 그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에 의한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 20.7 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법정 서기란 지정된 기록원을 말한다.

전문가란 이 부속서(절차 규칙)의 규칙 제 30 항(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패널이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법정 공휴일이란 한국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스라엘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당사국이 공식 휴일로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 20.7 조에 따라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절차란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대표자란 당사국의 정부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을 말한다.